#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3238

○ 발 의 자 : 문성호 의원 외 23명

○ 발 의 일 : 2025년 10월 20일

○ 회 부 일 : 2025년 10월 23일

## 2. 주문

○ 「북한인권법」에 제9조의2(북한인권증진의 날)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매년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인권증진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것을 건의함.

## 3. 제안이유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발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최소한의 인권조차 박탈당한 북한 주민들의 삶은 가감 없이 표현해 생지옥이나 마찬가지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상 방역 통제를 빌미로 북한에서의 인권은 더욱 박탈당했으며, 봉쇄구역 진입자는 무조건 죽이라는 생명권 침해까지 자행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은 한반도 역사상 전례 없는 잔인무도한 수준이며, 북한 김정은과 지도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확고히 하고자 외부 정보 차단을 위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했으며, 체포한 탈북민의 강제 북송 과정에서 공포심을 심고자 여성과 아동에게 성폭행 및 비인간적 처우를 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 2014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공개한 조사보고서는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중대성, 규모, 성격은 “현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가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북한의 여러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crimes ag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북한 사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함.

○ 2024년 12월 20일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군포로를 기억하고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날은 지정된 바 없음.

○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 유엔 COI 보고서가 공개되었고, 작년 한국, 미국, 일본이 1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한 모든 인권침해와 유린 종결을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낸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매년 2월 17일의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도록 「북한인권법」에 제9조의2(북한인권증진의 날)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을 할 것을 건의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인권법」 등

## 5.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 6. 검토의견

## 가. 건의안 개요

○ 본 건의안은 최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공감대 확산, 국제사회 관심 및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공개된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국회에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을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3, 김기현의원 등 10인)이 2025년 9월 24일 발의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 나. 건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이하 ‘위원회’라고 함)가 2014년 2월 17일 발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차별,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식량권 및 생명권,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 등 6개 분야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어 왔고, 그 중 많은 것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며,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사안을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음.[1)]

---

1) 자세한 내용은 통일연구원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요청으로 번역한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4년 7월 참조.

※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3년 3월 21일 유엔 제22차 인권이사회에 의해 설립되어 같은 해 5월 7일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위원장을 비롯한 소내 비세르코(somja Biserko), 마르주끼 다루즈만(Marzuki Daru) 등 3인으로 구성되었고, 같은 해 6월경부터 9인의 경험 있는 실무진들의 도움을 받으며, 조사에 착수하여 2014년 2월 17일에 36쪽의 최종 보고서(A/HRC/25/63) 및 371쪽의 세부보고서(A/HRC/25/CRP.1)를 발표하였음.[2)]

※ 동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국제형사관습법 및 ICC에 관한 로마 규정상 정의에 근거하여 주요 가해자를 명시, 조선노동당의 핵심 기관,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 사법부, 조선노동당의 관료 등을 명시, 북한의 최고위층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제형사법에서의 지도부 및 상급자 책임 원칙에 주목하고,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김정은에게 보내는 서한에 포함해 가해자들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 할 것을 촉구하였음.

**〈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주요 권고사항 〉**

| 이해관계 국가 | 주요 권고 내용 |
|---|---|
| 북한 | • 정치·제도 및 사법부 개혁<br>• 사형제 폐지 등 형법·형사소송법 개정<br>• 정치범 수용소 폐쇄 |
| 유엔/국제사회 | •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인권실태 회부<br>•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br>• 책임성에 대한 규명을 위한 조직 설치 |
| 중국 | •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원칙 준수<br>• 북한이탈주민 보호 |
| 한국 | • 남북한 간의 대화 활성화 등 |

※ 출처 : 안제노, “COI보고서 이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성과와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NO.300, December 2024, 4면 표 재인용.

2) 김태훈, “한국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 국가인권위원회·연세대학교 휴먼리버티센터·(사)북한민주화위원회 주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4.8.27., 5면 재인용.

○ 동 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이전까지는 북한 인권 문제는 만성적인 북한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위원회 설립과 함께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보다 진일보한 정책을 택하였으며, 국제적 합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음.

- 또한, 위원회는 '국제사회가 북한 시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권고했으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사례를 다루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안보리의 경우, 조직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국제형사재판소로(ICC)의 회부나 구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와 같은 형태의 임시형사재판소의 설립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고, 이는 북한의 인권침해와 억압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이라는 평가와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 의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음.[3)]

○ 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보고서 채택 1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2024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면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 현행화(업데이트)를 포함하는 북한인권 포괄보고서(comprehensive report)를 2025년 인권이사회 제60차 회기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4)]

---

3) 김헌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의 성취와 문제점",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제2호, 2016년 12월, 90-92면 참조.

4) 이규창·최규빈·김태원·남승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4-03, 2024년 12월, 19면 참조(Un Doc, A/HRC/RES/55/21 (9 April 2024), para. 16. *Requests* the High Commissioner to submit a comprehensive report containig an undate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ince 2014, whe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was published, and taking stock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to the Human Rights Council at its sixtieth session, to be followed by an enhanced interactive dialogue).

※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에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 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가들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였음. 또한,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하였음. … 인권최고대표가 2014년 COI 보고서 발간에 이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60차 인권이사회('25.9월)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Enhanced Interactive Dialogue)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외교부 보도자료, "제55차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환영한다", 2024년 4월 4일자 참조).

- 2025년 11월 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를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하였고,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으로, 북한 내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고, 특히,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 대부분의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지속 감시 대상'으로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음.[5)]

○ 또한, 통일연구원이 북한 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한 가장 최근의 북한 인권 실태(『북한인권백서 2024』)를 살펴보면, 북한 체제의 고유한 특성인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 수준이며, 일인 지배체제와 권력 세습을 유지하기 위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 집중화를 위하여,

---

5) 시사위크, 「유엔, 북한인권 결의 채택… "정치범수용소·강제노동 해결 안 돼"」, 2025년 11월 20일자 참조. 자세한 내용은 유엔 총회 결의 A/C.3/80/L.29* 참조.

-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 각종 법률 제정을 통해 외부 정보, 특히, 남한의 방송 및 녹화물 시청과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로 주민들의 사상 및 사회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전한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하고 있음.[6]

〈 『북한인권백서 2024』 중 권리별 평가 〉

| 구 분 | 내 용 |
|---|---|
| 생명권 | • 주민들의 생명권 보장되지 않음.<br>- '20년 이후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마약범죄방지법」 등 특별법 제·개정으로 사형 명시<br>- '23년 2월 「형법」 개정으로 반국가 선전·선동죄, 무기·탄약비법제작죄, 무기·탄약비법사용죄, 폭발물비법제조·보관죄, 폭발물비법사용·양도죄 등 5개 죄목 사형을 추가 |
|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여전히 발생<br>• 교화소, 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의 구금시설에서 강제노동 및 과도한 노동, 폭행 및 가혹행위 일상화 |
|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매우 미흡<br>• '20년을 전후로 여러 법령 제정 통해 사회통제 강화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보접근권 침해 |
|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 • 여행증 제도와 구간별 단속 통해 이동의 자유 제한<br>• 당국이 규정하는 불순세력에 대한 강제추방, 특정지역 접근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 여전히 유지 |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규정상 재판의 독립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판의 독립 허용되지 않음.<br>• 동지심판제도, 국가보위성 정치범 재판,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 유사사법제도 운영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에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br>• 최근 「행정처벌법」 수정·보충으로 처벌조항 크게 확대, 행정처벌을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사회통제 수단으로 활용 |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지역의 감시 강화<br>• '5호담당제', '인민반제도', '생활총화제도' 등 제도적인 차원의 사생활 감시제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br>• '23년 12월 제정된 「인민반조직운영법」은 인민반장 권한 확대로 북한 주민 사생활 감시 심화 |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 '19년 군중신고제 도입, 「반중사상문화배격법」 제·개정, 「혁명사적사업법」 및 「청년교양보장법」 제정 통해 주민에 대한 사상 통제 강화<br>• 대부분 주민 종교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등 심각하게 제한<br>• '17~'18년부터 미신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가 높아짐. |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권 | • 언론 및 출판물 당국의 임의 검열 및 규제<br>• 컴퓨터와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단속과 검열 및 처벌 계속 강화<br>• '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시행, '23년 「적지물처리법」 제정하여 적지물 반입 및 유포행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명시 |

6)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4』, 2024년 12월, 42-43면 참조.

| 구 분 | 내 용 |
|---|---|
|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허용되지 않음.<br>• 당국이 허용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제도화된 단체에 참가할 것 강요 |
| 참정권 | • 직접·보통·평등·비밀 투표 원칙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br>• 당이 추천한 후보에게 찬성투표만 함. |
| 식량권 | •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임.<br>• 포전담당책임제라는 식량증산정책 펼치고 있으나 불공정한 포전분배, 불충분한 영농자재 공급, 분배과정에서의 횡령 만연, 과도한 생산 목표 설정과 수매, 식량 생산량 허위보고, 다양한 형태의 공출 등으로 인해 식량 생산 증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br>• '21년「양정법」개정으로 시장에서 식량 판매 금지 등으로 식량 유통에 대한 국가적 통제 |
| 건강권 | • 무상치료제 표방하나 실제로는 비용 부담, 계층 혹은 경제력 차이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차이 존재<br>• 치료용으로 빙두나 아편 등 마약류 사용, 마약류 오남용이 북한 지역사회에 깊숙이 침투 |
| 노동권 | • 개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없이 일방적인 직장배치 실시<br>• 부모의 계급적 성분 대물림으로 노동자, 농민 등 직업적인 계급이동 어려움<br>• 직장에 일정 금액을 한 달에 한번 바치면서 직장에 나가지 않고 비공식적인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8.3 입금' 노동자 증가 |
| 교육권 | • 무상교육제도 표방하나 무상교육 유명무실<br>• 교육환경 여전히 열악, 특히,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시설을 비롯한 교육환경 차이가 크게 남.<br>• 사상교육, 정치행사 동원, 의무적 군사교육, 의무노동과 방과 후 노동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건강권 침해 |
| 사회보장권 | • 사회보장제도는 법적인 측면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제 역할 못함. 당국의 역량 부족과 재정 상황도 뒷받침하지 못함. |
| 여성 | • 여전히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br>• 출산율 저하와 코로나19 이후 사회통제 강화 흐름 속 이혼을 비롯한 가족해체에 대한 당국 통제 심화가 주로 여성의 인권 약화로 귀결<br>• '22년「형법」개정으로 성폭력 범죄 형량 오히려 경감 |
| 아동 | • 북한 아동에 대한 영양 및 백신 지원을 담당해 왔던 국제기구 활동 여전히 제약<br>•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북한 아동들의 식량권과 건강권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위협받고 있음.<br>• 아동들이 과도한 정치사상교육 받고 있으며,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 동원, 실탄사격까지 하는 군사훈련 실시 |
| 장애인 | •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를 별도의 시설에서 진행,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요인으로 작용<br>• 왜소증 장애인 격리와 불임수술 등 지역사회 통합 및 가정에 대한 존중을 침해하는 행위 의혹 있음. |
| 정치범수용소 | • 대다수 북한 주민들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인지<br>• 정치범수용소 수용자들의 인권 실상에 관련된 새로운 증언 수집되지 않음.<br>•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 지적으로 북한 당국 일부 정치범수용소 폐쇄하거나 이전 |
| 해외탈북자 | • 해외탈북자, 특히, 중국 내 탈북자는 송환 이후 집결소, 구류장, 단련대, 교화소에서 조사, 재판 및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침해받고 있음.<br>• '20년 북중 국경지대뿐만 아니라 해안지대, 한국과의 경계인 최전선 지대 근처 들어가는 경우 무조건 사격하라는 포고<br>• '23년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임. |
| 해외노동자 | • 장기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림, 노동소득 중 상당부분을 상납금 형태로 국가뿐만 아니라 중간 단위에도 빼앗김.<br>• 현지 체류 기간 내내 신분증 압수당한 채,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 속에 단체생활로 사생활 침해 |

| 구 분 | 내 용 |
|---|---|
|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 •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우리 국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영사접견권 심각한 침해<br>•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는 가족결합권, 즉 가정에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가정을 구성하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침해 |
| 차별 및 불평등 | • 성분 및 계층 분류에 의한 차별은 입당, 직장배치 간부등용 및 승진, 진학, 군입대, 거주지배치 등에서 지속<br>•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화교 및 귀국자들에 대한 차별 지속<br>• 문화시설은 평양이나 도시 집중, 이동의 제약으로 접근성에 격차 존재 |

※ 출처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4』, 2024년 12월에서 각 권리의 평가 부분에서 중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음.

○ 따라서, 「북한인권법」 개정을 통하여 “북한인권증진의 날”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여 최근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및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본 건의안의 취지는 의미있다고 하겠음.

○ 다만,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이 실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담보하지 않으며, 특정 보고서 발간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대표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됨.

○ 또한, 그동안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은 위원회 보고서 발표('14년 2월)에서는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최고지도자에 대한 형사책임 언급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며, “북한체제의 전복(顚覆)”을 의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였고,

- 2019년 11월 20일에는 「대응조치법」을 제정하여, ‘공화국은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를 비우호적인 행위의 첫 번째 유형으로 제시하고(제3조), 양자조약 폐기, 다자조약 탈퇴, 외교관계 중지 또는 단절, 경제 관계 제한 또는 단절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제4조)하고 있는바,[7]

7) 통일연구원, 앞의 보고서, 44-45면 참조.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이 오히려 화해·협력 분위기를 훼손할 측면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로 북한 내 인권 상황 파악과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및 법과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외부 정보 접근으로 스스로의 인권 인식 향상을 통한 북한 사회 내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사회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음.

| 전 문 위 원 | 정 찬 일 | 입법조사관 | 최 문 숙 |
|---|---|---|---|